

2022년 대한환자안전질향상간호사회
[환자안전전담자의 역할과 환자안전개선사례]

비대면 연수교육
 교육일시: 2022.6.9.(목) 09:00 ~ 18:00

구분 (각 50분)	주제 (강의포함 요청사항)	강의자
1차시	환자안전전담자 역할	고우리 (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PI팀장)
2차시	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 운영 및 사례	최은정 (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QI실 파트장)
3차시	환자안전 개선 사례 - 의사소통, 투약	조은주 (서울대학교병원 QPS팀장)
4차시	환자안전 개선 사례 - 수술, 마취/진정	이들영 (서울아산병원 PI팀 Unit Manager)
5차시	환자안전 개선 사례 - 시설환경 및 의료기기	김민지 (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PI팀장)
6차시	환자안전 개선 사례 - 낙상	김은희 (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적정진료관리팀 부팀장)

- * 등록 완료자에 한하여 강의 자료는 PDF 파일로 제공되며, 홈페이지에 등록된 이메일 주소로 발송됩니다.
- * 필수) 강의 수강률 100% 충족 시 이수증이 발급되므로, 강의 수강률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
- * 동영상 강의실 오픈 기간 (6월 9일 (목) 09:00 ~ 6월 10일 (금) 17:00)내에는 반복 수강이 가능합니다.

등 록 안 내

<참가인원>

제한없음

<참 가 비>

등록 정/준회원 : 6만원

※ 회원 구분

- 등록회원 : 회원 가입 후 입회비와 연회비를 납입한 회원으로 승인된 날로부터 1 년간 연수교육 및 학술대회 등 대한환자안전질향상간호사회에서 진행하는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 부여
- 정회원 : 간호사
- 준회원 : 간호사 이외 직종

<등록안내>

- 1) 등록기간 : 5월 6일 (금) 13:00 ~ 5월 29일 (일) 24:00
- 2) 등록방법 : 홈페이지 로그인 -> 학술대회/연수교육 -> 비대면 연수교육 신청 -> 가상계좌로 교육비 입금
- 3) 등록완료는 참가신청 후 입금까지 완료된 상태로 등록기간 내 미입금 시 등록이 취소됩니다. (가상계좌 입금기한과 무관합니다.)

<수강방법>

- 1) 수강방법 : 홈페이지 로그인 -> 동영상 강의실 -> 내 강의보기 -> 해당 교육의 [시청하기] 클릭
- 2) 동영상 강의실 오픈 기간(6월 9일 (목) 09:00 ~ 6월 10일 (금) 17:00) 내에는 반복 수강이 가능합니다.

<이 수 증>

- 1) 출력방법 : 동영상 강의실 - 이수증 출력 또는 마이페이지 - 학술대회/교육이력 화면에서 출력
- 2) 해당 교육은 실시간 동영상 강의로 수강률 100% 충족하여야 이수증이 발급됩니다.
- 3) 제공되는 강의영상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시청하여 강의 수강률 100% 충족하여야하며,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강의영상을 시청한 경우 이수증 발급이 불가합니다.
- 4) 발급된 이수증은 6월 13일 (월) 부터 조회 및 출력 가능하며, 동영상 강의실 오픈 기간 동안은 이수증 조회 및 출력이 불가합니다.

<영 수 증>

- 1) 가상계좌로 입금 내역이 확인되면 **결제사(NHN KCP)를 통해 거래명세서가 이메일로 발송됩니다.**
- 2) 결제요청 시 현금영수증 용도 선택 후 등록 가능하나, 세금계산서는 발행되지 않습니다.
: 소비자 소득공제용 또는 사업자 지출증빙용 중 하나 선택하여 등록.
- 3) **기관(병원)에서 교육비를 지원 받는 경우, 반드시 사전에 발행용도 확인 후 현금영수증 등록하시기 바랍니다. (용도 - 사업자 지출증빙)**
- 4) 현금영수증 용도 오류로 인한 재발급은 어렵습니다.
- 5) 등록된 현금영수증은 등록된 날로부터 1일 후 국세청 현금영수증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합니다.
- 6) 거래명세서 및 현금영수증 재발송이 필요한 경우,
이메일(kosqin@qi.or.kr)로 재발송이 필요한 내역 / 성함 / 휴대전화번호 / 소속기관 / 입금일자를 기입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.
- 7) 영수증 관련 업무는 이메일로만 접수 가능하며, 매주 목/금요일 순차적으로 처리됩니다.

<알 림>

- 1) 환 불 : **6월 3일 (금)부터 환불 불가합니다.**
- 2) 환불을 원하시는 경우, 홈페이지 -> 학회소식 -> 공지사항 - [공지] 교육 등록 취소 및 환불 신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3) **해당 교육은 의료기관평가인증기준 7.1 조사항목 2. 의료기관 차원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활동을 수행하는 적격한 자에서 요구되는 교육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.**
급성기 병원 3주기 인증조사 표준지침서에 질 향상과 환자안전관련 학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인정이 된다고 되어 있고, 교육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.

<문 의>

대한환자안전질향상간호사회 사무국 02-701-4799, kosqin@qi.or.kr